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권기만, 김복자, 안장환, 안주찬
윤영철, 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 의원(9명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- 법제처의 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”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(자구수정)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(안 제2조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률 명칭 수정 (안 제5조 제1항 제5호)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 중 “의회구성일 이후 처리 되는 사무” 삭제(안 제6조 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, 제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류 시 건

□ 본 조례안은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- 법제처의 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”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(자구수정)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은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(안 제2조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률 명칭 수정 (안 제5조 제1항 제5호)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 중 “의회구성일 이후 처리 되는 사무” 삭제(안 제6조 제2항)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안건의 분산 효과, 감사 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.
- 또한 상위법률 인용조문의 명칭 수정,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현재 도내 10개 시의회 중 7개 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